

전라남도 통보

제 목 경영적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 필요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이하 “강진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진의료원은 2021. 8월말 현재 [표 1] “강진의료원 자산 총괄 현황”과 같이 자산대비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표 1] 강진의료원 자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A)	부채(B)	자본(A-B)	비고
금액	2,936	14,022	△11,086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표 2] “강진의료원 부채 현황”과 같이 차입금(6,600백만원)과 퇴직급여충당금(6,255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강진의료원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차입금	약품비	재료비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금액	14,022	6,600	329	291	165	6,255	382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부채현황 중 차입금 내역은 [표 3] “강진의료원 차입금 현황”과 같이

전라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6,600백만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3] 강진의료원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차입기금	차입목적	차입금	이자율	차입일시	상환기간	상환조건
계		6,600				
지역개발 기금	퇴직금(중간정산)	3,600	2.0%	2018.7.31.	2019 ~2033년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
	경영안정 자금	2,000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지정 운영자금	1,000		2021.2.5.	2022 ~2036년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2021. 9. 27. ~ 10. 5.) 중 강진의료원의 경영적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 경영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경영쇄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그에 따른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② 출연기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효율적 합리적 재무관리로 튼실한 출연기관 육성을 목표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사책발행 억제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운영과 방만 경영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 운영쇄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강진의료원 운영쇄신 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체성 및 역할재정립과 운영 효율화 등 쇄신 방안 등을 매월 1회 정기 회를 개최하여 협의·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을 강화하며,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운영과 방만 경영을 억제하며,

운영채신 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 채신 방안 등을 위해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협의·자문 하여 경영 적자에 따른 고강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4] “연도별 손익 현황”과 같이 의료수익은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의료비용은 의료수입 대비 적게는 25억에서 많게는 57억원까지 의료손익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 외 수익은 2019년과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원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의료 외 비용 상승 등으로 당기순이익 또한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19억원까지 발생하였다.

[표 4]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손익현황		
	2018	2019	2020
의료수익(A)	13,242	12,175	10,093
의료비용(B)	15,751	16,144	15,881
의료손익(C) (A-B)	△2,509	△3,969	△5,788
의료외수익(D)	1,625	3,177	6,233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원으로 일부 증가
의료외비용(E)	597	1,203	1,188
당기순이익 (C+D-E)	△1,481	△1,995	△743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표 5] “연도별 인건비 현황”과 같이 2018년 76%, 2019년 87%, 2020년 106%로 매년 상승하여 의료수익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은 강진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예상되어 대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도

2021. 10. 5. 감사일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표 5] 연도별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의료수익	13,242	-	12,175	-	10,093	-
인 건 비	10,136	76.55%	10,696	87.85%	10,716	106.18%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표 4] 및 [표 5]와 같이 인건비 상승과 의료손익 및 당기순이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강진의료원 부채는 [표 6] “연도별 재무 현황”과 같이 자산 총액이 매년 줄어들어 부채가 2020년 현재 141억원이고, 자본 총액이 △112억 원으로 자본이 잠식되고 있다.

[표 6] 연도별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부채현황		
	2018	2019	2020
자산총액(A)	3,084	2,739	2,894
부채총액(B)	11,568	13,218	14,115
자본총액(A-B)	△8,484	△10,479	△11,221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강진의료원(충무과)은 위와 같이 매년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에 위치하여 여건이 열악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적자폭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 쇄신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경영적자폭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영쇄신위원회를 매월1회 이상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일인 2021. 10. 5.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한편, 강진의료원은 2021. 5월경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경영채신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견에 따라 같은 해 5. 28. “강진의료원 중장기 경영채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으로부터 위 경영채신 계획을 보고받은 전라남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위 보고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등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위 보고서 9페이지에 경영정상화 TF팀은 4팀(진료, 진료지원, 경영관리, 조직활동)으로 구성하여 전략과제별 개선과제 모니터링 및 평가와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강진의료원(총무과)은 2021. 5월경 경영정상화를 위한 TF팀까지 구성한 후 이 또한 2021. 10. 5.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는 등 경영채신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부채가 140억원으로 매년 경영적자 폭이 증가하여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제공 어려움과 인건비는 의료수익대비 106%로(2020년 기준) 결국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보조금을 추가 투입하게 될 우려가 있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 2020. 2월 이후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업무가중 등의 사유로 경영정상화 및 경영채신을 위한 TF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고강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을 강화하며,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운영과

방만 경영을 억제하며,

- ② 「강진의료원 운영쇄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강진의료원 운영쇄신 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체성 및 역할재정립과 운영 효율화 등 쇄신 방안 등을 매월1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협의·자문 하도록 하고,
- ③ 특히, 경영적자에 따른 현 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강도 경영 혁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징계·통보

제 목 직원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및 과소 적립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징 계 대 상 자 ○○과 ○○○ ○급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은 2018. 12월 전라남도로부터 2018년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결과(직원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등 업무소홀)에 대하여 [표 1]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현황”과 같이 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표 1]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퇴 직 적 립 금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인출금	상환금		
계	800,000	400,000		
2017. 5. 10	100,000		퇴직적립금은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인출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퇴직적립금 4억원 미상환	직원의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적립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미상환액(4억원)은 상환하도록 시정요구
2017. 5. 31	100,000			
2017. 6. 14		200,000		
2017. 6. 30	200,000			
2017. 12. 5		200,000		
2018. 7. 20	400,000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근거)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적립금¹⁾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100분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납입 등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 조치하고 퇴직적립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립하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2018년 전라남도 특정(종합)감사에서 위 [표 1]과 같이 퇴직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적받았는데도 관련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표 2]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현황’과 같이 2019. 1월부터 2020. 5월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4억 6천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 한 후 상환하였다.

[표 2]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전용일	전용금액	상환일	상환금액	목적 외 사용명세
계	460,000			
2019. 1. 21	100,000	2019. 1. 23	100,000	퇴직적립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 후 상환
2020. 2. 20	180,000	2020. 2. 24	230,000	
2020. 2. 20	50,000			
2020. 5. 8	130,000	2020. 5. 20	130,000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한 강진의료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표 3] ‘퇴직적립금 예치 현황’과 같이 감사일인 2021. 10. 5.현재 총 6,167,339천원 만큼 부족하게 예치하고 있다.

[표 3] 퇴직적립금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적정적립금액(A)	현재 예치금액(B)	부족 예치금액(A-B)	부족예치 사유
6,543,583	376,244	6,167,339	예 산 부 족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직원 퇴직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과 퇴직적립금을 부족(6,167,339천원)하게 적립함으로써 예치금이 3억 7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강진의료원(○○과) ○○○ ○○○ ○ ○○○은 2018년 강진의료원 종합감사결과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등 업무소홀과 퇴직적립금을 부족하게 적립할 당시 ○○○ ○ ○○○과 ○○○ ○ ○○○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은 2020. 1. 1.부터 2021. 10. 5.까지 1년 9개월 동안 직원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및 과소적립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2018년 강진의료원 종합감사결과 퇴직적립금은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인출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러한 지적내용을 알면서도

○○○은 ○○○○으로 발령받은 2020. 1. 1.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회에(2020. 2. 24. : 2회, 2020. 5. 20. : 1회) 걸쳐 360,000천원을 인출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는데도 ○○○○으로서 실무자들이 결재를 올리자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결재를 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또한 ○○○○ ○○○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감사일인 2021. 10. 5. 현재까지 예치금으로 376,244천원만 확보하고 있어, 총 6,167,339천원 만큼 부족하게 예치함으로서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그 결과 ‘제3항’ 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은 경영자금 부족으로 퇴직적립금을 일시 전용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상환하였고, 사용목적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충당이 사유인 점을 감안할 때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당초 적립목적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에 따라 퇴직적립금은 적립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인건비로 사용한 후 상환하여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징계요구 양정

직원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및 과소적립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의 행위는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 ① 2018년 전라남도종합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 및 과소 적립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 ○급 ○○○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64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특히,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에도 퇴직적립금을 여전히 목적 외로 사용함에 따라 앞으로 퇴직적립금을 전문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마련하며,

- ③ 또한, 퇴직적립금 과소적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맞게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징계·주의요구

제 목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공사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징 계 대 상 자 ○○과 ○○○ ○급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이하 “강진의료원”이라 한다)은 2018.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1.13억원¹⁾을 지원받아 2019년부터 “의료장비보강” 및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진의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숙사 개축공사 사업계획변경 절차 및 협의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강진의료원은 2018.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여건 조성을 통한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강진의료원 기숙사

1) 총사업비 10,113,000천원 : 국비 5,056,500천원(50%), 도비 5,056,500천원(50%)

세부사업별 사업비 : 의료장비보강 11억원, 의료원 BTL 임대료 30.13억원, 기숙사개축 60억원

개축공사” 사업을 승인 받았다.

강진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서에는 총 사업비 60억원, 사업기간은 2년, 대지면적 37,349㎡, 건축 연면적 2,777㎡이며 내부는 기숙사(60실), 휴게시설, 취사 및 세탁시설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적법·적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교부조건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1. 10. 5. 감사일 현재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공사를 살펴본 결과 강진의료원(총무과)은 2019. 4. 2. 전남개발공사와 공사비의 8.11%의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여 공사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²⁾하였다.

또한 강진의료원(총무과)은 전남개발공사와 2019. 9. 19. 업무협약 시 수탁기관 건축전문가로부터 사업비 부족, 사업기간 연장 필요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즉시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고, 1년 4개월이 지난 2021. 1. 11.에서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변경³⁾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의료원(총무과)은 설계공모 당선자인 (주)○○○(대표

2) 총공사비 60억원,

- 당초 : 건축비 5,354, 설계비 240, 감리비 59, 기타(철거비 등) 347

- 변경 : 공사비 4,733, 설계비 203, 철거비 600, 수수료 451, 부대비 13

3) 사업기간 : 당초 2019. 1. 1. ~ 2020. 12. 31. → 변경 2019. 1. 1. ~ 2021. 12. 31.

건축규모 : 당초 2,777㎡ → 변경 1,921㎡

이사 ○○○)의 설계용역 준공기간이 2022. 1. 4.까지로 계약⁴⁾되어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승인받은 2021. 12. 31.까지는 공사 착공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지 않고 있으며, 2021. 10. 5. 감사일 현재까지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비(2019년 보조금 42억원)의 불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지연으로 공사가 완료된 2022년부터는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간호사와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근로복지가 소홀히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3. 기숙사 개축공사 사업 추진 지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강진의료원은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9. 4. 2. 전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조사, 계획,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이 전남개발공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2019. 4월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계획할 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설계비 추정가격을 검토하여 법령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한편 감사일 제출된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체결 당시의 검토한 자료에는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추정가격은 184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어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4) 계약금액 221,442천원, 용역기간 2021. 3.~ 2022. 1.(11개월)

5)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물(2019. 1. 15. 개정, 2020. 1. 15. 시행)

※ 법령 개정 전은 설계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건축물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는 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고 전남개발공사와 사업규모 조정 등에 관한 협의만 지속하다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채 2020. 1. 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2020. 4. 8. “전라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의견이 회신된 2020. 6. 11.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사전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업규모 조정필요와 사업기간 부족문제는 2019. 9. 19. 수탁기관인 전남개발공사 건축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강진의료원(총무과)은 위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강행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2019. 9월부터 “전라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의견이 회신된 2020. 6월까지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간만 낭비하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강진의료원(총무과)은 승인받은 사업기간인 2021년 12. 31.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사업기간과 관련한 재협의를 필요하게 되는 등 소극·지연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강진의료원(○○과) ○○ ○급 ○○○은 2019. 8. 4.부터 2020. 7. 31.까지 약 1년간 위 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수탁기관인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진행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은 전남개발공사와 2019. 9. 19. 업무협의 시 수탁기관 건축전문가로부터 사업비 부족, 사업기간 연장 필요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즉시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보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지 않았고

2019. 9. 19. 당시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추정가격을 184백만원으로 검토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20. 1. 15.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검토를 받게 되었고, 협의의견이 회신된 2020. 6월까지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간만 낭비하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그 결과 ‘제2항 나’ 및 ‘제3항 나’ 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은 ‘21. 12월까지 기능보강사업 기숙사 관련 사업비(3,892백만원)를 위·수탁 계약기관인 전남개발공사에 이체하고 나머지 사업비(1,800백만원)도 ’22. 4월까지 이체할 계획을 알려왔으며, 앞으로는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맞게 사업비집행 및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수행보고서를 통해 공사 진행현황을 관리기관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최초 보건복지부 승인 시 감리비로 책정된 사업비를 전남개발공사에 지급할 위·수탁 수수료로 변경한 내용 등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이 변경되고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는 등의 내용은 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에 해당되어 사업계획 변경신청의 대상이며, 소극·지연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여 2021. 10. 5. 감사일 현재까지도 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 공사”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 등 담당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소극·지연 행정으로 당초 정해진 사업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던 간호사와 직원들의 복지기회를 상실하게 한 ○○○의 행위는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 ① 소극·지연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 ○급 ○○○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64조에 따라 “경징계” 하고(징계)
- ② 전라남도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사업이 정해진 기한 내 승인받은 조건 및 목적에 맞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강진의료원은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2016. 12. 29. 노사합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7. 3. 2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인사규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명세(2017~2021년)”와 같이 총 7명에 대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¹⁾를 시행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은 별도직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강진군의료원 인사규정」 제85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의사직, 최저임금의 150%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조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강진의료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임금피크제 1년차(58세)에는 임금총액의 5%, 2년차(59세)에는 임금총액의 10%, 3년차(60세)에는 임금총액의 15%를 감액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행정자치부, 2015. 9.) II. 임금피크제 권고(안) ④ 별도정원 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매년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에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 전환 인력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에서 제외하며 그 외 인력은 종전 직급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2016. 5.) Ⅱ.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② 신규채용 규모 설정 및 ③ 신규채용 후 별도정원 편에 따르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① 기존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②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게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금액으로 신규채용을 하여야 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① 기존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②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결정한 후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명세(2017~2021년)”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7명은 정원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정원외로 관리²⁾하였고, 정년연장(57세에서 60세)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만큼 신규채용을 하여야 하는데도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85조 제3항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18. 7월부터 2021. 7월까지 ‘○○○’ 등 5명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존업무를 유지하려면 기존 직급에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직군으로 관리하였다.

2)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정원내 인력으로 포함할 경우 정원초과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며,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은 앞으로 노사간의 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료원 운영실정에 맞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앞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신분 및 업무 관리 등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권고

제 목 보수관련 규정 개정 절차 및 초과진료성과급 회수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강진의료원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연봉제규정」(이하 “연봉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연봉제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이하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 ○월부터 20○○ ○월까지 ‘○○○’ 당시 원장에게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 제5조를 근거로 [별표 1] “원장 급여 명세”와 같이 내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에 대한 초과진료성과급 명목으로 150,062,24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2018년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결과를 전라남도 감사관-14029(2018. 12. 14.)호로 통보하면서 강진의료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원장의 보수를 전라남도지사와 ‘○○○’ 간 체결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 당시 원장에게 잘못 지급한 150,062,240원의 초과진료성과급을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2. 의료원 보수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¹⁾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결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진의료원 소속 임원 및 직원(관리부장, 일반의 이상 의사, 실·팀·과장)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연봉제규정」을 2016. 10. 24.과 2018. 1. 26. 2회에 걸쳐 개정하고,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 평가 및 진료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을 2016. 10. 24.과 2019. 12. 20 2회에 걸쳐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결 절차는 진행하였으나 의결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5. 1. 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항을 신설하여 지방의료원 의사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한 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초과진료성과급 회수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완료

1) (신설) 2015. 1. 28. → (시행) 2015. 7. 29.

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은 전라남도의 2018년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대로 ‘○○○’ 당시 원장에게 잘못 지급한 150,062,240원의 초과진료성과급을 회수하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의료원(강진의료원)은 ‘○○○’ 원장에게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잘못 지급한 150,062,240원의 초과진료성과급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를 통보받았는데도 2021.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 당시 원장에게 잘못 지급한 150,062,240원의 초과진료성과급 회수여부에 대하여 [별표 2] “초과진료성과급 회수 관련 법률자문 결과 명세”와 같이 자체 법률자문(3회)²⁾ 및 전라남도(건강증진과)에 법률자문(고문변호사 7명)을 의뢰한 결과, ‘○○○’ 원장에 대한 초과진료성과급 회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³⁾이고 지도·감독 부서인 전라남도(건강증진과)에서도 환수 소송의 실익이 낮다는 의견이어서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① 전라남도지사와 ‘○○○’ 원장 간의 성과계약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⁴⁾에 따라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한 계약이고,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은 「연봉제규정」 제23조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연봉제 규정」 제2조에 연봉제 보수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만 이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장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전라남도지사와 ‘○○○’ 원장 간의 성과계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 ② 강진의료원이 의뢰한 자체 법률자문 및 전라남도(건강증진과)과 의뢰한 고문

2) (1회) ○○○○○○법인 : 2019. 1. 4. / (2회) 법무법인 ○○ : 2019. 6. 10. / (3회) 법률사무소 ○○ : 2019. 12. 9.

3) (자체 법률자문) 3회 결과 3회 모두 환수 부정 의견, (전남도 고문변호사 자문) : 4명 환수 불가, 3명 환수가능

4)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2014. 9. 25.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변호사 7명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 「연봉제규정」 제2조에서 정한 「연봉제규정」의 적용범위 및 「연봉제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었던 점⁵⁾, ③ 전라남도지사와 ‘○○○’ 간의 재임기간 중 체결한 성과계약상의 연봉에 대한 지급 대상·기준과 「연봉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기준이 [별표 3] “원장 보수 관련 규정 비교 명세”와 같이 기본연봉, 성과급, 부가급여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나 실제 ‘○○○’ 원장에게 연봉이 지급될 때는 경영성과계약서 대로 지급되고 있었고 초과진료성과급만 「연봉제규정」을 적용하여 지급되었다는 점 등이 검토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당초 자문결과에 대한 미비점 등을 추가 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2018. 12월에 통보된 2018년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결과 조치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이 2021.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군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강진군의료원장은 감사결과 확인된 기존 법률자문 결과에서 미비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장 보수는 전라남도지사와 체결한 성과계약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원장 보수사항을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추가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봉제규정」과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 상의 원장 보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별표] 생 략

5) 「연봉제규정」: 2016. 10. 24. 2018. 1. 26.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은 거쳤으나 전라남도에는 보고하지 않음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 2016. 10. 24.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은 거쳤으나 전라남도에는 보고하지 않음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의사직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이하 ‘강진의료원’이라 한다)은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자와 계약기간 연장 시 1일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총무과)은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휴게시간을 주되 해당 휴게시간을 주 1회 반일 연가 또는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형태로 확대하여 운영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강진군의 지리적 여건상 의사직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서상의 1일 근로시간에 따른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 1회 반일 연가 등의 형태로 쉬게 해주는 것으로 이면 합의하여

2018. 3.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과 의사 ○○○의 1일 근로에 따른 휴

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매주 금요일 전일을 휴진하도록 하는 등 [표] “최근 3년간 과별·의사별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연간 적게는 33일에서 많게는 51일을 쉬도록 편익을 주고 ○개 ○○○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명에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주 1회 반일 연가 또는 주 1일의 유급 휴가 등의 형태로 쉬게 해주는 등 일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표] 최근 3년간 과별·의사별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현황

년도	과명	의사명	계약기간	매주 휴진시간(요일)	연간 휴진일수	퇴직일자
2018	○○○과	○○○	20○○. ○. ○. ~ 20○○. ○. ○.	8시간(○요일)	51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3.5 ¹⁾	2019. 3. 5.
2019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3.5	
	○○○과	○○○	20○○. ○. ○. ~ 20○○. ○. ○.	8시간(○요일)	50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8.5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5	
2020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5.5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9.5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3	
	○○○과	○○○	20○○. ○. ○. ~ 20○○. ○. ○.	8시간(○요일)	48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5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5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8.5	
2021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6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6.5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6.5	
	○○○과	○○○	20○○. ○. ○. ~ 20○○. ○. ○.	8시간(○요일)	33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	2021. 1. 31.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4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2	2021. 2. 2.
	○○○과	○○○	20○○. ○. ○. ~ 20○○. ○. ○.	4시간(○요일 오후)	16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찰과 치료가 시급한 외래 환자 등이 진료를 못 받게 되는 등의

1)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연간휴진 일수임

의료 공백 등 공공의료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은 농어촌 벽지근무 기피지역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사직에게 인건비 조정 과정에서 휴게시간 제공을 조건으로 공고,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용 공고문은 채용 절차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상호의사 합치에 의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표] 의사직 9명의 평균 연봉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8년도 한국 직업정보’ 보고서의 의사 평균연봉 9,603만원 보다 약 3.2배나 많은 30,740만원임이 확인되는 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확대하여 쉬게 해주고 그 대신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였다는 강진의료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일부 의사에게 1일 근로시간에 따른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 1회 반일 연가 또는 주 1일의 유급 휴가 등의 형태로 쉬게 해주는 등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징계요구

제 목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징계대상자 ○○과 ○○○ ○급 ○○○

징계의종류 경징계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이하 ‘강진의료원’이라 한다)은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 5. 13.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포함) 위탁처리 용역 공고(공고번호 제2021-○○호) 하여

같은 해 5. 24. 개찰 결과 (주)○○○²⁾이 공동수급체 방식(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여하여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3개의 업체³⁾ 중 1순위가 되자

같은 해 5. 24. 위 (주)○○○에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같은 해 5. 31.까지 제출토록 통보한 후

같은 해 6. 2. 위 (주)○○○과 공동수급협정 업체인 ○○○에 대한 경영상태(신용평가) 등 적격심사 하여 95.5점을 받게 되자 같은 날짜에 위 용역 계약을

2) (주)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수급표준협정하였고 분담 비율은 각 70%, 30%임

3) 1위 ○○○투찰금액 198,933,260원(예가비율 88.500%), 2위 ○○○ 투찰금액 198,979,810원(예가비율 88.521%), 3위 ○○○투찰금액 200,476,080원(89.187%)

체결(계약기간 2021. 6. 7. ~ 2023. 5. 31, 계약금액 198,933,260원)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2021. 5. 13.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포함) 위탁처리 용역 공고」 제5항에 따르면 적격심사는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르면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총무과)은 적격심사 평가 대상업체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등급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입찰공고일인 2021. 5. 13.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전년도 말 재무결산 기준으로 기업신용을 평가한 자료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같은 해 6. 2. 적격심사를 하면서 (주)○○○과 공동수급협정 업체인 ○○○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재무 결산기준일이 각각 2019. 12. 31.과 2020. 12. 31.으로

○○○이 제출한 위 자료의 재무 결산기준일이 2020년 12월 말에 평가한 것

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 평가해야 하는데도 위 자료의 등급 유효기간이 2021. 6. 30.까지 되어 있다는 사유로

[표 1] “적격심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주)○○○이 제출한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의 경영상태(신용평가) 평가항목에서 본 업체의 신용등급 BB0에 해당하는 평점 16점에서 공동수급협정 비율인 70%를 곱하여 산출한 11.2점과

공동수급협정 업체인 ○○○의 신용등급 BB-에 해당하는 평점 15점에서 공동수급협정 비율인 30%를 곱하여 산출한 4.5점을 합산한 15.7점을 기재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은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보다 0.5점이 높은 95.5점을 받아 같은 해 6. 2. 위 용역의 낙찰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 1] 적격심사 부적정 현황

구분		배점한도	(주)○○○ 자기평점	강진의료원 심사평점	비고
총 평점		100	100	95.5	
해당 용역수행 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	16	15.7	15.7	
	기술능력	4	4	4	
	신인도	+7.5~△10	0.8	0.8	
입찰자격		80	80	75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주)○○○은 재무결산 기준을 전년도 말로 하여 평가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2021. 10. 1. 감사일 현재 강진의료원에 제출하였고, 신용등급이 BB-로 확인되었다.

그로 인하여 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표 2] “적격심사 재산정 현황”과 같이 (주)○○○와 공동수급협정 업체 ○○○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당초 15.7점에서 0.7점이 감소된 15점이 되는 등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에서 0.2점 부족한 94.8점을 받게 됨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같은 해 6. 2. 낙찰자로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적격심사 재산정 현황

구분		배점한도	강진의료원 심사평점	재산정 평점	비고
총 평점		100	95.5	94.8	
해당 용역수행 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	16	15.7	15 ⁴⁾	
	기술능력	4	4	4	
	신인도	+7.5~△10	0.8	0.8	
입찰자격		80	75	75	

자료 :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강진의료원 ○○○ ○○○은 2020. 1. 1.부터 2021.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포함) 위탁처리 용역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위 ○○○은 2021. 5. 13.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포함) 위탁처리 용역 공고문에 명시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은 (주)○○○의 공동수급협정 업체인 ○○○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위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2020. 12. 31. 재무결산 기준일로 하여 2021. 4. 5. 평가된 것과 다르게 (주)○○○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위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없는 2019. 12. 31. 재무결산 기준일로 하여 2020. 7. 1. 평가된 것으로 2021. 6. 2.

4) (주)○○○과 ○○○는 2020. 12. 31. 재무결산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BB-로 해당 평점이 15점이며, 위 업체의 공동수급협정비율이 각 70%와 30%로 위 평점에서 각 비율을 곱하면 각 10.5점과 4.5점이 산출됨

적격심사 시 위 (주)○○○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는 것으로 하여 위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해야 했는데도

위 (주)○○○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된 것이고, 유효기간 내에 있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여 평가하는 등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신용평가한 등급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은 신용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적격심사 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신용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첫 번째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세 번째로 입찰공고일 기준일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 규정이 있는 사유는 입찰 공고일에 가장 최근인 년도나 반기 또는 분기별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일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 건정성, 안정성 등이 평가된 것을 확인하여 계약 이행 중에 기업의 부도나 폐업 등을 최소화한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 등의 취지인 것으로 세 번째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진의료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징계요구 양정

2021. 5. 13.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포함) 위탁처리 용역 계약 적격심사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의 행위는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2021. 5. 13.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포함) 위탁처리 용역 계약 적격심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급 ○○○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64조에 따라 “경징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금고 지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이하 ‘강진의료원’이라 한다)은 2011. 12. 29. ○○은행 ○○지점과 금고계약(계약기간 2012. 1. 1. ~ 2012. 12. 31.)을 체결한 후 2021. 12. 31.까지 매 1년씩 9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하여 위 은행은 위 의료원의 수입금 수납 및 지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강진의료원 정관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강진의료원 회계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의료원(총무과)은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 지정 시 수의계약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을 통해 본 의료원의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등을 우대하는 금융기관을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강진의료원(총무과)은 금고 지정 시 일반경쟁을 통해 적용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경영 수익개선을 해야 하는데도

IMF(년도는 알 수 없음) 당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은행 ○○지점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강진에서 위 은행이 없어진다는 사유와

위 계약서 제14조 규정의 당사자 간에 해지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매 1년씩 자동연장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2011. 12. 29. ○○은행 ○○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매년 1년씩 자동연장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은행에 금고 취급 관련 자동연장을 하면서 자동연장 계획 내부결재나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비교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일반경쟁 방식을 통해 예금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않고 자동연장을 함으로써 [표 3] “최근 2년간 지정금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 손해액 발생 명세”와 같이 1,013천 원의 이자 손해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최근 2년간 지정금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 손해액 발생 명세

년도	연 평균 잔액	지정금고 금리	미 지정금고 금리	지정금고 이자액(A)	미 지정 금고 이자액(B)	이자 손해액(A-B)
2019. 8. 13. ~ 2021. 9. 30.	518,799	0.01	0.10	111	1,124	-1,013

주 : 단위는 천원이며, 2012년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는 지정금고와 미 지정금고의 금리가 0.10%로 동일
자료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강진의료원은 2021년 12월 이내에 금고계약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금고 업무 취급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금고의 금리 및 병원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진의료원장은 앞으로 금고 취급 기관 선정 시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기준(안)을 마련하여 입찰 공고를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는 금융기관
이 선정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